

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및 정책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영향평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입법영향평가의 실시, 대상 및 방법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기능, 운영 및 위원 해촉 규정(안 제6조~제8조)

마. 자료 요구,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규정(안 제9조~제11조)

3. 검토의견

▶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전반

가. 입법 필요성

-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조례의 양적 증가 및 정책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, 조례 시행 이후 정책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- 현행 제도는 입법 전 단계의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어, 시행 이후 조례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.
- 본 제정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조례 정비 및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본 제정안은 입법영향평가의 대상 조례를 “시행 후 4년 경과” 또는 “평가 후 4년 경과” 조례로 설정하여 주기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임.
- 상위 법령 위임 조례 및 조직·인사 등 기술적 조례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조례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점은 타당한 입법 설계로 판단됨.

- 입법영향평가를 의장이 실시하도록 하고,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임.
- 다만, 입법영향평가의 세부 기준·절차·방법을 의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기준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다. 법적 타당성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을 가지며,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.
- 본 제정안은 조례의 사후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는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의장이 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, 시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, 지방의회의 견제·감시 기능 수행 측면에서 타당한 범위로 보임.
- 다만,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점은 의회의 내부기구로서 운영상 가능하나,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는 외부위원 비율 확대 등 보완 검토 여지가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조례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, 조례의 실효성을 제

고하고 책임 있는 입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.

- 평가 대상, 주기, 절차 및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.
- 다만, 평가 기준 및 절차의 구체성 부족, 위원회 설치의 임의 규정, 결과 공개의 재량규정 등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